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460300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진 정 인 정OO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진정위원회'라 함)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받아 읽어보려고 했으나, PDF 파일이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되어 읽을 수가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우리 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선거공보 등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이하 '후보자등' 이라 함)가 제출한 것을 편집 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임의로 후보자등이 제출한 파일을 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다.

2) 다만,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선거공보 내용의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 제작 프로그램(VOICEYE) 지원 등 시각장애인의 후보자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후보자등에게 의무화하려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3)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등에게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선거공보 파일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4) 한편,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에서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같음 가능)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거공보는 매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정책·공약 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후보자에 관한 공보 또는 벽보 내용은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통합자료실→선거정보도서관의 역대후보자 공보·벽보→후보자 선전물→후보자 이름을 입력하고 마우스의 단추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고, 피진정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면 당선인 선거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보내용을 '내려받기' 하면 PDF 파일로 저장되는데, 후보자 또는 당선인에 따라 이 PDF 파일은 이미지 형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미지 형식은 그림으로 읽히기 때문에 공보 내의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텍스트 형식은 글자를 인식할 수 있다.

다. 진정인이 이용하는 센스리더는 이미지 형식은 읽을 수 없고, 텍스트 형식은 글씨를 인식하여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 공보자료가 이미지 형식이냐, 텍스트 형식이냐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달라진다.

라. 피진정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선거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임의서비스이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진정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와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1) 피진정인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또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선거공보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후보자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편집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임의 서비스로서, 법적 근

거 없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기에 모든 후보자 등에게 의무화하려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공직선거법」의 ‘점자형 선거공보’는 분량이 많아지기에 비장애인을 위한 일반 선거공보물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또한, 선거공보물 제공 의무가 있는 일부 선거(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점자를 해독할 줄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센스리더’¹⁾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²⁾ 등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점자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3)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이 아닌 장애를 고려한 별도의 적극적 조치인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다른 기본권과 비교하여 우월한 중대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의 핵심에 해당하는 선거정보에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고려한다면,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 자료가 임의서비스라고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면낭독프로그램

2) 인쇄물접근성 바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정보로 변환해 주는 기계

4)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3항에서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 등이 선거공보물 등을 피진정위원회에 제출할 때 시각장애인도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형식의 파일 등으로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있는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9.

위원장 정문자

위원 임성택

위원 김민호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